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보도시점 2026. 6 9.(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연매출 30억 원 초과 점포 및 병원·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 도입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7월 19일부터 유효기간 만료 예정 가맹점 대상 갱신 신청 접수 개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6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원·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시행일 이후 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하 '매출액 등')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또한 기존에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등) ▲수의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도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에 포함된다.

아울러 신청 당시에는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을 충족해 등록됐더라도, 이후 매출액 등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전까지 개정된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과징금이 도입되며, 기존에 별도 제재 처분이 없던 일부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경우 등에는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그동안 적발 시 단순 주의조치에 그쳤던 ▲가맹점 외 장소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는 행위 ▲소비자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부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기한 내 갱신 신청을 당부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현재 등록된 가맹점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26년 10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가맹점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 2026년 10월 19일 만료 예정 가맹점은 2026년 7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신청 가능

갱신을 희망하는 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중기부는 갱신 대상 가맹점이 신청기간을 놓쳐 자격이 만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카오톡 메시지와 온누리상품권 누리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	책임자	과 장	윤준구 (044-204-7890)
		담당자	사무관	권용준 (044-204-7874)
			주무관	윤원민 (044-204-7908)
			주무관	서가영 (044-204-790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1 **온누리상품권 주요 변경 내용 및 안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주요 변경 내용

온누리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더욱 집중하여 지원합니다.

1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점포는 가맹이 제한됩니다.

- 직전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결제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신규 가맹 및 유효기간 갱신이 제한**됩니다.
  -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으로 확인합니다.
  - ※ 법 시행 전(6.17) 가맹된 가맹점은 현재 가맹 유효기간 동안 매출액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가맹 제한업종이 확대됩니다.

- **보건업**(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수의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이 제한업종에 추가됩니다.
  - ※ 법 시행 전(6.17) 가맹된 가맹점은 현재 가맹 유효기간 동안 가맹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부정유통에 대한 세부 제재 기준이 마련됩니다.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외 장소에서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으로 결제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됩니다.
- 거래를 통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재사용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4 가맹 유효기간 갱신 접수가 시작됩니다.

- 가맹점에 부여된 3년의 가맹 **유효기간**에 대한 **갱신 제도가 최초 시행**됩니다.
-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갱신 승인 시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간 가맹 자격이 유지**됩니다.
- **갱신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은 7월 19일 부터 **온누리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에서 가능하며,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또는 우편·팩스·메일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세한 내용은 **온누리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2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업종 비교

현 행 (29개)		⇨	개 정 (33개)	
표준산업분류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제한업종**
46107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107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6492	귀금속 도매업		46492	귀금속 도매업
46722	귀금속광물 도매업		46722	귀금속광물 도매업
47231	주류 소매업		47231	주류 소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621	주점업		5621	주점업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5821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4	금융업
65	보험업		65	보험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		71531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
			731	**수의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8462	연금업		8462	연금업
855	일반교습학원		855	일반교습학원
			86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21, 91222, 91229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91222, 91229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참고3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제재처분 기준**

※ □ : 신설 (단위 : 만원)

대상	위반행위	재가맹 제한기간*	과태료·과징금 (1차/2차/3차 위반)
개별 가맹점 (상인)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6개월	과태료 (10/20/30)
	(A)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	3년	과징금 (부당이득금의 3배↓)
	(A)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	3년	과징금 (부당이득금의 3배↓)
	가맹점 밖에서 거래(비대면 결제 포함)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	6개월	과태료 (300/500/1,000)
	소비자에게 거래의 대가로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경우	6개월	과태료 (50/100/200)
	(B)제3자(브로커 등)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유통·사용하는 경우	5년	과징금 (부당이득금의 3배↓)
	소비자가 온누리상품권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하였으나 현금으로 잔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6개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하는 경우	1년	-
	가맹점 등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6개월	-
환전 대행 가맹점 (상인회)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환전을 대행하는 경우	1년	과태료 (500/1,000/2,000)
	(A)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환전대행을 대행하는 경우	3년	과태료 (1,000/1,500/2,000)
	개별가맹점이 가맹점 밖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환전을 대행하는 경우	6개월	과태료 (300/500/1,000)
	환전대행한도를 초과하여 환전을 대행하는 경우	1년	과태료 (500/1,000/2,000)
기타	개별가맹점이 아닌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	과태료 (10/50/100/ 1,000/2,000)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을 유통하는 경우	-	과태료 (1,000/1,500/2,000)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유통·사용하는 경우 * (B)에 해당하는 공모자	-	벌금 (2,000↓)
	위반행위 조사 시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과태료 (300)
	연락을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지연하는 등 위반행위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	-	과태료 (300↓)

* 부정유통이 적발될 시 위반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되며 일정 기간 재가맹 제한